

『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회 식

나. 제안이유

-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야외운동기구의 범위 및 설치(안 제3조 ~ 제7조)
-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(안 제8조 ~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○ 본 『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』은

-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주요내용은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, 설치장소, 설치기준, 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임.

○ 검토 결과,

-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야외 운동기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, 야외운동기구의 특성상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, 이에 대한 설치·관리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운동기구의 노후·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.
-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제도개선 권고 및 경상북도의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실태 감찰결과에 따라 현행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·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
- 야외운동기구 현황 관리 및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